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수 산 자 원 관 리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문성혁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비어업인이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14조(포획·채취금지)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「수산자원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17106호, 2020. 3. 24 공포, 2020. 9. 25. 시행)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자함

또한,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해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유효기간 연장 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면제(근해어업, 시·도 경계수면의 경우 서류제출의무 유지)하고,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오징어, 대문어 등 총 14개 어종의 금어기·금지체장에 대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안 마련하였으며, 갈치 등 어린물고기 어획저감을 위해 여수 연도(소리도)와 진도 관매도 지역에 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5. 19. ~ 6. 30.) 예정

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시·도지사는 법 제 4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”로, “따라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”을 “따라”로 한다.

별표 1 제2호나목의 포획·채취 금지 기간·구역 및 수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파목을 삭제한다.

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

별표 1 제2호에 거목 및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거. 삼치	<i>Scomberomorus niphonius</i>	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
너. 감성돔	<i>Acanthopagrus schlegelii</i>	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

별표 1 제5호라목의 포획·채취 금지 기간·구역 및 수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. 다만, 시·도지사가 5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따로 정하여 지역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한다.

별표 1 제6호나목의 포획·채취 금지 기간·구역 및 수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(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 및 정치망어업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)

별표 1 제6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참문어	<i>Octopus vulgaris</i>	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. 다만, 시·도지사가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한다.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별표 2 제1호나목의 포획·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란 중 “15센티미터”를 “20센티미터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의 포획·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란 중 “12센티미터”를 “20센티미터”로 하며, 같은 호 라목의 포획·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란 중 “20센티미터”를 “25센티미터”로 하고, 같은 호 아목의 포획·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란 중 “21센티미터”를 “35센티미터”로 하며, 같은 호 차목의 포획·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란 중

“30센티미터”를 “35센티미터”로 하고, 같은 호에 폐목부터 고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폐. 용가자미	<i>Hippoglossoides pinetorum</i>	20센티미터 이하
허. 기름가자미	<i>Glyptocephalus stelleri</i>	20센티미터 이하
고. 청어	<i>Clupea pallasii</i>	20센티미터 이하

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기 타	가. 대문어	<i>Octopus dofleini</i>	600그램 이하
	나. 살오징어	<i>Todarodes pacificus</i>	외투장 15센티미터 이하. 다만,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·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별표 8에 제4호와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다음 각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은 4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업을 금지한다.

가. 북위34도24분49초 동경127도48분16초

나. 북위34도24분53초 동경127도55분00초

다. 북위34도24분32초 동경127도48분18초

라. 북위34도24분32초 동경127도38분35초

5. 다음 각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은 7월1일부터 9월

30일까지 조업을 금지한다.

가. 북위34도13분08초 동경126도02분14초

나. 북위34도14분46초 동경126도19분45초

다. 북위34도05분00초 동경126도15분00초

라. 북위34도05분00초 동경126도00분00초

별표 17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· 채취하였을 경우	법 제70조제2항제1호	80
---	--------------	----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) ①·② (생략)	제33조(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시·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	③ <u>시·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--- 따라 -----</u> ----- -----.
1.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이용 및 관리실적표	1. ~ 4. (현행과 같음)
2.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 및 의견서	
3.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해당 관리수면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사본	
4. 관리수면의 관리·이용에 관한 경과보고서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540